



Cisco Systems 정책 개정: **Cisco 파트너의 전 세계 부패방지법 준수**

Cisco Systems는 Cisco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해당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채널 파트너, 컨설턴트, 에이전트 및 기타 관계자(통칭하여 Cisco 파트너)가 Cisco를 상대로 또는 Cisco를 대신하여 Cisco 고객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항상 전문적인 자세 및 윤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며 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Cisco 파트너는 다음을 이행합니다.

- (a) 모든 국가, 연방, 주 및 지방의 법률, 법령, 규범, 조례,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해외부정거래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준거법")을 비롯한 부패방지법이 포함되어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isco 파트너는 다음 URL에서 FCPA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usdoj.gov/criminal/fraud/docs/dojdocb.htm>(또는 publicsectorcompliance@cisco.com으로 문의)
- (b) Cisco가 FCPA를 비롯한 준거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공급업체 또는 제3자의 그러한 행위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 (c) Cisco가 지불하는 자금 또는 기타 계약상의 대가를 Cisco가 사업권을 획득하거나 획득한 사업권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할 목적으로 다음 개인 또는 조직에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FCPA 또는 기타 준거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선출직과 임명직을 불문한 집행, 입법, 사법 또는 행정 기관 책임자, 국제 연합(UN)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공공 국제기구의 담당자, 정부, 공공 기관 또는 공기업 소속의 공무 수행 담당자 또는 그 대리인 포함)
 - 정당 또는 당 관계자
 - 행정관 후보
 - 위에 명시된 개인 또는 조직에게 자금 또는 금품의 전부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제공될 것으로 약정됨을 알고 있는 개인
- (d) 요청이 있는 경우 Cisco 파트너는 해당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부패 방지 정책 준수에 관한 서면 진술을 작성하도록 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취했음을 Cisco에게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 Cisco와 파트너 간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기록 보관, 감사 및 기타 관련 약관은 본 정책의 준수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 (f) 어떠한 경우에도 Cisco는 공급업체 또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거한 특정 행위의 이행이나 불이행이 FCPA 또는 기타 준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선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 (g) Cisco는 Cisco 파트너가 본 정책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거나, 파트너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성명, 진술 또는 보증을 행하였다고 선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서면 통지와 함께 즉시 Cisco 파트너 계약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 (h) Cisco 파트너는 Cisco 직원 또는 Cisco 파트너의 업무 관행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한 사항이 발생하면 ethics@cisco.com으로 전자 메일을 보내거나 Cisco 지원 센터로 전화를 걸어 Cisco에 즉각 통지해야 합니다. Cisco 지원 센터 전화 번호는 북미 지역 1-877-571-1700(수신자 부담), 기타 지역 001-770-776-5611(Cisco에서 요금 부담)입니다.

본 정책은 http://www.cisco.com/legal/anti_corruption.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